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00 발의연월일: 2021. 5. 10.

발 의 자:김승남·양정숙·송갑석

맹성규 • 이규민 • 박성준

용혜인 • 박영순 • 소병훈

이상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(농기계)는 자동차처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, 농기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음. 농기계 소유권 확인과 폐기 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 한 실정임.

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 허·보험·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. 이에 농 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 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.

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에 농기계를 판매·폐기하거나 중고 거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 함(안 제9조의 4 및 제9조의5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9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폐기"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·파쇄(破碎)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·파쇄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"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(引受),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, 폐기 및 그 말소신 고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4(농업기계 폐기 등)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"라 한다)는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농업기계에 저당권

- 이 설정되었거나 해당 농업기계가 압류된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.
-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-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, 재활용한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기록·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.
- ⑦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요건 및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과 중고부품 재활용 기록·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5(중고거래의 신고)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용 표시를 한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자(농업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농림축

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·제6호·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라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
- 6.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
- 7. 제9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·보관한 자
- 1.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기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. "폐기"란 농업기계를 해체하
	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
	록 압축·파쇄(破碎) 또는 절
	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
	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·파쇄
	하는 것을 말한다.
<u> <신 설></u>	5. "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"이란
	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
	(引受), 수리를 목적으로 한
	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, 폐
	기 및 그 말소신고 신청의 대
	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제9조의4(농업기계 폐기 등) ①
	<u>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</u>
	하는 자(이하 "농업기계해체재
	활용업자"라 한다)는 농업기계
	소유자로부터 폐기의 요청을
	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
	를 인수하고 해당 농업기계를

- 페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소유자로부터 제1항 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요 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농업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해당 농업기계가 압류된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.
-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 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. 다만,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

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 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-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재활용 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 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 야 한다. 이 경우, 재활용한 중 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 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기록·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.
- ⑦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요건 및 농업기계 폐기사실확인과 중고부품 재활용 기록·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<u>제9조의5(중고거래의 신고) 제9조</u> <u>의2제1항에 따라 농업용 표시</u>

<신 설>

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(생 략)<신 설>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를	한	중고	농업기]계를	구입	<u>한</u>
<u> 자(</u>	농업	인을	포함	한다.	이하	같
<u>다)</u>	느	농림측	축산식	품부?	장관에	게
신크	고하 (여야	한다.			

제18조	(과태료	.) ① -	 	

----.

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
여 농업용 표시를 지우거나

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

<u>를 한 자</u>

- 4. (현행과 같음)
- 6.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페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
- 7. 제9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·보관한 자
- 2 -----

-----.

1. 제9조의5를 위반하여 중고농 업기계를 구입한 후 신고하지

	아니한 자
<u>1.·2.</u> (생 략)	<u>2.⋅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	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